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가담금액의 규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,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미리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종전에는 3차 위반 시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보건복지부 제공>

●환경부령 제857호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9월 29일

환 경 부 장 관 인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(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) ① 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, 별지 제33호서식의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(이하 “보고서”라 한다)에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보고서의 수정·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[별지 제33호서식]

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
제출인 정보	상호	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		연락처	
	사업장 주소				
	환경표지등의 제거 업무 담당자	부서:	직위:	성명:	
		전화번호:		전자우편주소:	
인증 관련 정보	인증번호			인증취소처분일	
	인증받은 제품명				

환경표지등의 제거
이행실적 내역

환경표지등의 제거
미이행실적 내역 및 그 사유 (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)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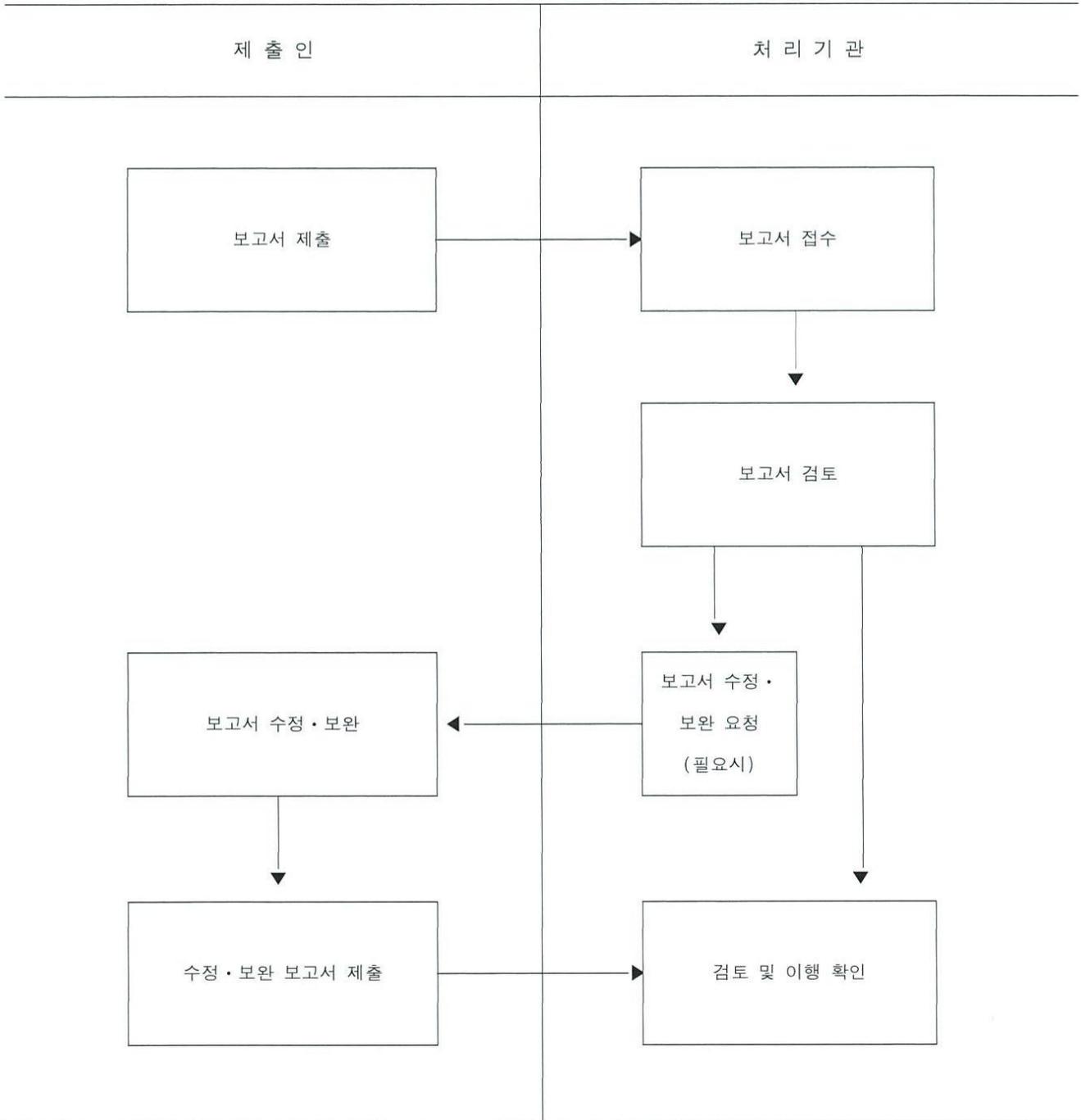
(뒤쪽)

작성방법

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내역은 보고서 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된 사항을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17183호, 2020. 3. 31. 공포, 10. 1. 시행)됨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에 그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불필요한 변경신고에 대한 절차 및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환경부 제공>

●환경부령 제883호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9월 29일

환 경 부 장 관 인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7항에 제6호, 제8호, 제9호,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대기측정망 설치·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
- 8.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·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9. 기후·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
- 9의2.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·발표에 관한 사항
- 9의3. 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
제7조제7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9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0.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

제7조제10항에 제24호의2 및 제2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4의2.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
- 24의3.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·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3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장의4(제23조의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의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

제23조의4(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)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원·농업연구원·보건연구원·환경연구원 또는 수의연구원으로 보한다.

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·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, 질병감시팀장은 서기관